

공 고 문

신시도 및 가력도 배수갑문, 군산항 남방파제,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주변 해상추락,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1. 대 상

- 가.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(5개소)
- 나.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(1개소)
- 다.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(4개소)
- 라.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“신항만 방파제(1개소)

※ 상세 장소 :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

2. 출입통제 지정일 : 2017. 9. 11.

3. 출입통제 기 간 : 연 중

4. 참고사항 :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17. 9. 1.

군 산 해 양 경 찰 서 장

출입통제장소 구역도

가.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(5개소)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
- 기 간 : 연 중



나.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(1개소)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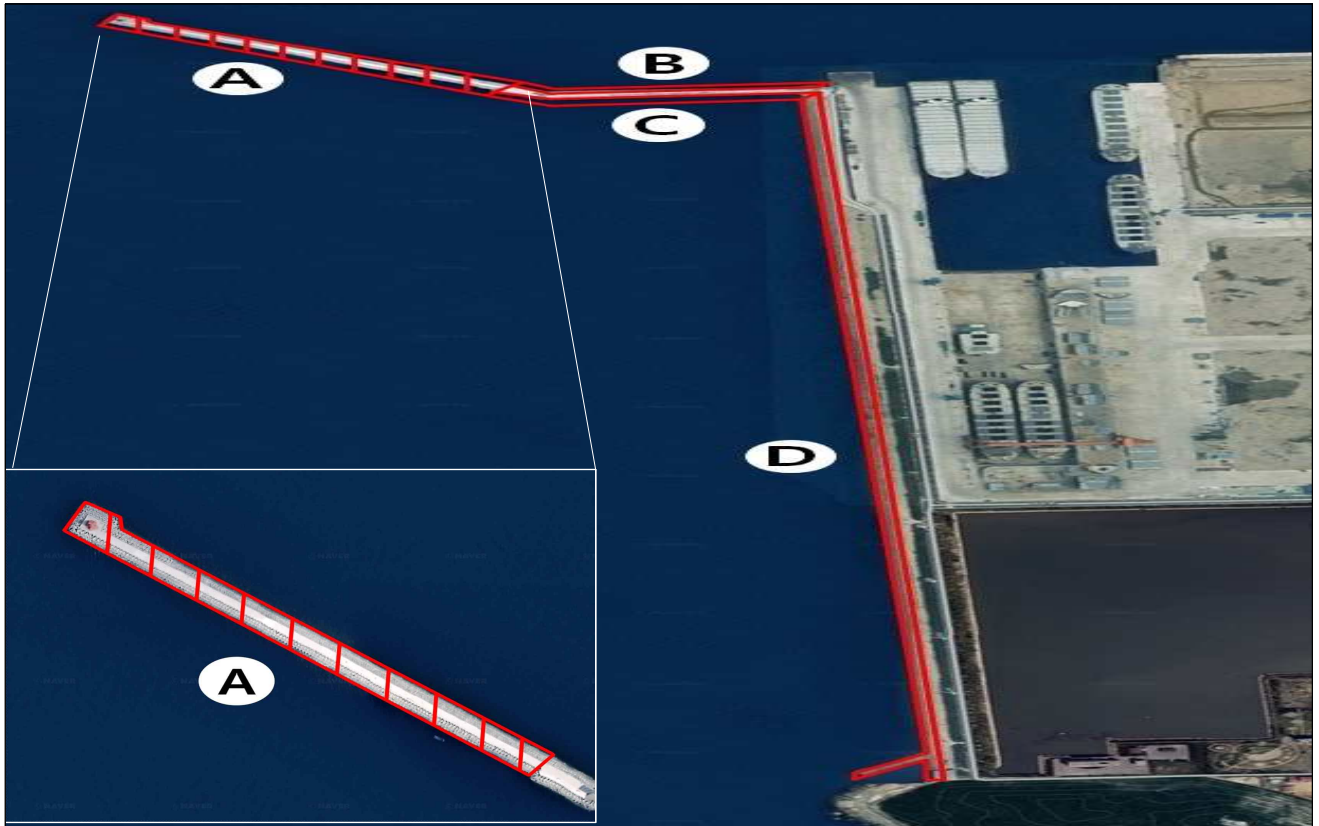
- 기 간 : 연 중



다.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(4개소)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
- 기 간 : 연 중



라.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 “신항만 방파제” (1개소)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
- 기 간 : 연 중

